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

본 지침서는 점자 규격, 표기 내용, 설치 위치, 재질 등 점자 편의시설 미비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이동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제작됨. 따라서 점자 편의시설 제작, 시공,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표준화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점자 편의시설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목차 CONTENTS

01 개요	6
02 공통 사항	12
03 점자 안내판	18
04 손잡이 점자 표지판	30
05 벽면 점자 표지판	40
06 승강기 점자 표지판	50
07 기타 점자 편의시설	58
부록	68
부록1 점자 편의시설 관련 내용 정리	
부록2 점자 편의시설 설치 사례집	
부록3 점자 일람표	
부록4 점자 예시	

이미지 출처

-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 한국장애인개발원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내 및 유도 매뉴얼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개요

1. 목적
2. 용어 정리
3. 적용 범위
4. 법률 및 지침 근거



이 개요

1.1 목적

2020년 국립국어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동행정복지센터(203개소)의 점자 표기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점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29%, 부적정 설치율이 35.7%, 미설치율이 35.3%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이 점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점자 편의시설을 설치해도 표기 내용과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본 지침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편의시설의 세부 기준) 1항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2조(이동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에 1항에 따라 발주자, 시공자나 제작자,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자 등이 점자 편의시설 관련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점자 편의시설 종류별로 표준 지침을 정하고자 하였다.

1.2 용어의 정의

1.2.1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2.2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a) 매개 시설: 접근로, 단차, 경사로, 출입구(문) 등
- b) 내부 시설: 일반 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종합안내소 등
- c) 위생 시설: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일반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욕실, 샤워실과 탈의실 등
- d) 안내 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등

- e) 기타 시설: 관람석, 열람석, 매표소, 자동판매기, 음료대, 작업대, 개찰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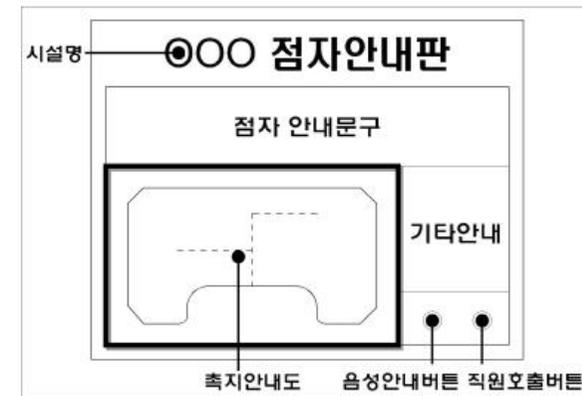
1.2.3 이동 편의시설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접근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규정된 이동 편의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a) 매개 시설: 보행 접근로, 주 출입구 등
- b) 내부 시설: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 c) 위생 시설: 장애인 전용 화장실, 일반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
- d) 안내 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등
- e) 기타 시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개찰구, 승강장, 보안검사장, 대기시설, 음향 신호기 등

1.2.4 점자 안내판

촉지 안내도, 점자 안내 문구, 직원 호출 버튼 및 음성 안내 장치 등이 포함된 안내 시설로 건물의 주 출입구 인근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과 시설 이용을 돕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1.2.5 촉지 안내도

건물 실내 공간 및 편의시설의 위치 정보를 돌출된 선과 면, 촉지 기호, 점자 등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공간 정보를 촉각으로 알려 주는 안내도

1.2.6 점자 표지판

표지판의 정보를 점자로 표기한 표지판을 뜻하며, 설치 장소와 형태에 따라 벽면 점자 표지판과 손잡이 점자 표지판으로 나뉜다.

1.2.7 점자 블록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시각장애인의 보행 과정 중 직선 보행, 방향 전환, 목적지 발견 3요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정확한 보행 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편의시설이다. 기능에 따라 경고용 점형 블록과 유도용 선형 블록이 있다.

1.2.8 주 출입구

실외에서 건물 내로 들어오기 위한 주된 출입구

1.2.9 경사로

계단이 설치된 육교나 지하도, 건물 진입로 등에 단차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자나 보행 장애인 등의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시설물을 말한다.

1.2.10 승강기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수직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 교통약자법에서는 '승강기'로, 국가기술표준 KS규격에서는 '엘리베이터'로 지칭한다. 본 지침서는 승강기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1.2.11 목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인쇄된 문자와 숫자, 기호를 통칭하는 것으로 점자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1.2.12 카(car)

승강기에 있어서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운반 기구를 일컫는 말로 엘리베이터 관련 KS 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1.2.13 음향 신호기 버튼 합체

음향 신호기 버튼을 위한 전자제품 및 통신용 장비를 넣어 두기 위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 규격(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용어

1.3 적용 범위

본 지침서가 적용되는 점자 편의시설 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대상 시설 내에 설치되는 점자 관련 편의시설이며, 동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외의 점자 편의시설은 해당 시설의 기능, 형태를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점자 편의시설 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1.4 법률 및 지침 근거

1.4.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1.4.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1.4.3 점자법

1.4.4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 안내도 단체 표준

1.4.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 국가기술표준

02

공통 사항

1. 점자 규격
2. 표기 내용
3. 제작법(점자 돌출 공법)
4. 재질
5. 마감



02

공통 사항

2.1 점자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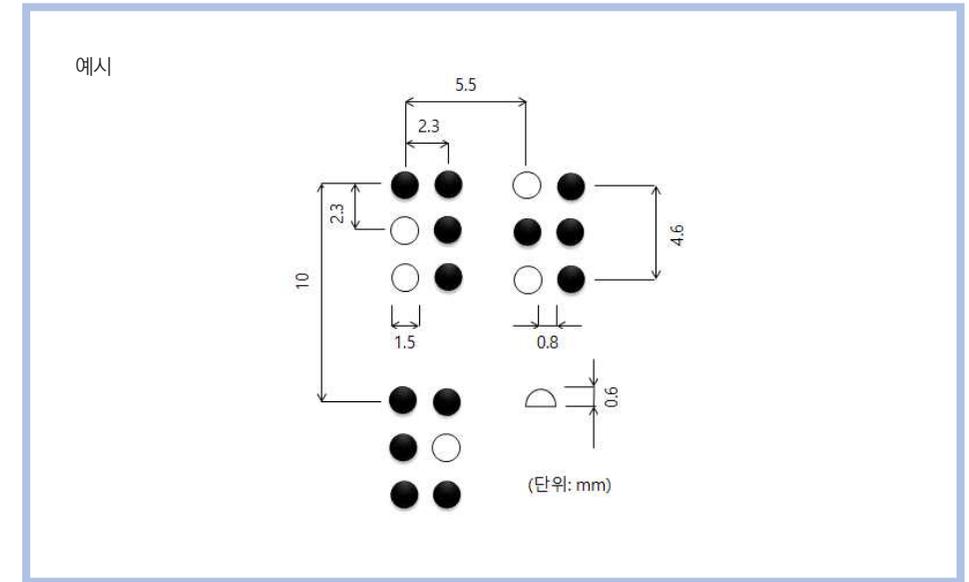
점자의 물리적 규격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의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제6항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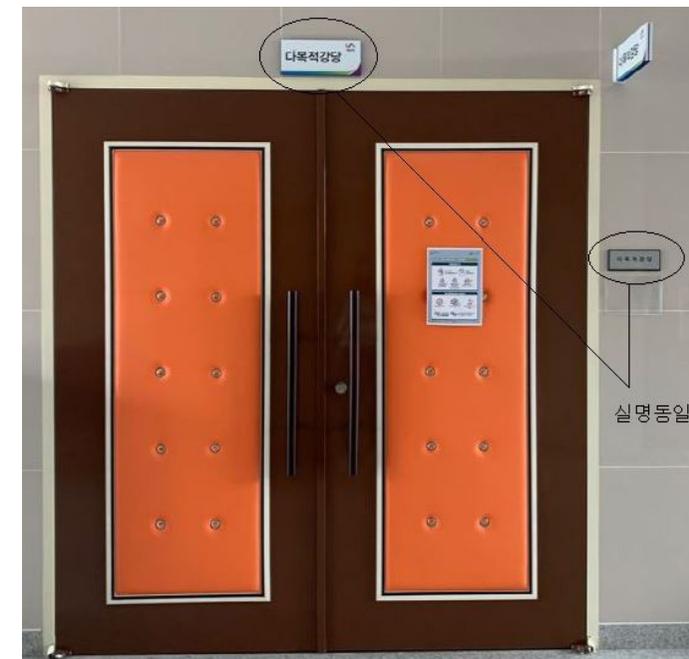
제7항 한국 점자의 물리적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점 높이: 반구형 점의 중심점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2. 점 지름: 반구형 점의 밑면 중심을 지나 점의 둘레와 만나는 직선거리
3. 점간 거리: 점간 내 한 점의 중심점에서 인접한 다른 점의 중심점까지의 거리
4. 자간 거리: 수평으로 나열된 두 점간에서 같은 점 번호에 해당하는 두 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5. 줄간 거리: 수직으로 나열된 두 점간에서 같은 점 번호에 해당하는 두 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6. 한국 점자 사용 규격
 - 가. 점 높이: 최솟값 0.6mm 최댓값 0.9mm
 - 나. 점 지름: 최솟값 1.5mm 최댓값 1.6mm
 - 다. 점간 거리: 최솟값 2.3mm 최댓값 2.5mm
 - 라. 자간 거리
 - 종이, 스티커: 최솟값 5.5mm 최댓값 6.9mm
 - 피브이시(pvc): 최솟값 5.5mm 최댓값 7.3mm
 -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최솟값 5.5mm 최댓값 7.6mm
 - 기타 재질: 위의 규격을 준용하여 사용
 - 마. 줄간 거리: 최솟값 10.0mm 최댓값 정하지 않음
 - 바. 점자 규격 그림(예시)



2.2 표기 내용

점자 편의시설의 표기 내용은 목자로 제공되는 정보(내용)나 실제 위치 정보와 동일하게 표기한다.



2.3 제작법(점자 돌출 공법)

제작 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3.1 UV 프린터

UV 잉크(빛에 노출되면 바로 굳는 경화 잉크)로 인쇄를 여러 번 진행하여 잉크를 층층이 쌓아 돌출부를 제작하는 방법이다.

2.3.2 타공

금속판, PC판 등 다양한 판 재료를 뒤에서 점핀으로 치거나 눌러서 제작하는 방법이다.

2.3.3 금형

알루미늄 등 여러 재질의 판 재료를 금속 재료로 만든 틀에 넣고 찍어 내는 방법이다.

2.3.4 기타

천공된 점자 셀에 점자 구슬을 삽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2.4 재질

2.4.1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한다. 타공식 점자로 제작할 경우 내구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소 두께인 0.3밀리미터 이상으로 제작한다.

2.4.2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손을 뿔 수 있는 재질은 사용하지 않고 위생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2.5 마감

2.5.1

돌출된 선, 면, 점은 손이 베이지 않고 쾌적하게 촉지할 수 있도록 마감하며 선, 면, 점 등을 음각으로 새기지 않는다.

2.5.2

시각장애인의 촉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촉지가 매끄럽게 진행, 유지될 수 있도록 점자 표지판의 표면을 마감한다.

종류	점자 편의시설 제작 장비		
UV프린터기			
타공기계			
점자타공 (수작업)			
금형			

03

점자 안내판

1. 기능
2. 종류
3. 대상 시설별 설치 의무 여부
4. 세부 기준
5. 제작
6. 설치
7. 유지 관리 및 보수



03

점자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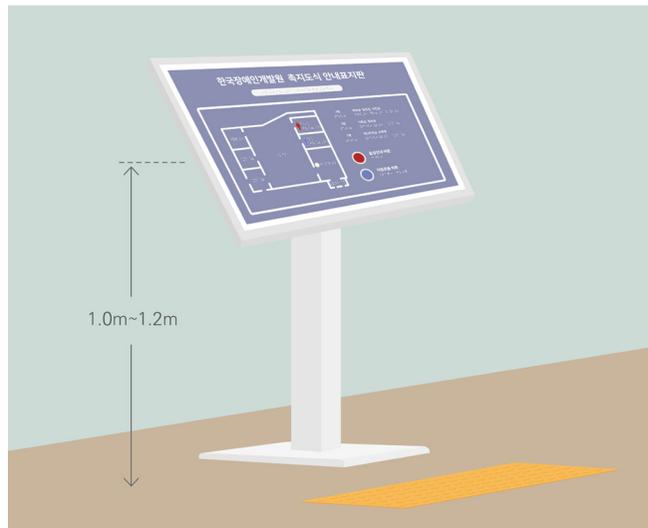
3.1 기능

점자 안내판은 시설의 주요 동선을 돌출된 선과 점자로 표현한 안내판으로 시각장애인이 시설의 공간 구조 및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주 출입구 외부 가까운 곳에 설치하며 목표 지점까지의 보행 동선을 확인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움 목적으로 설치한다.

3.2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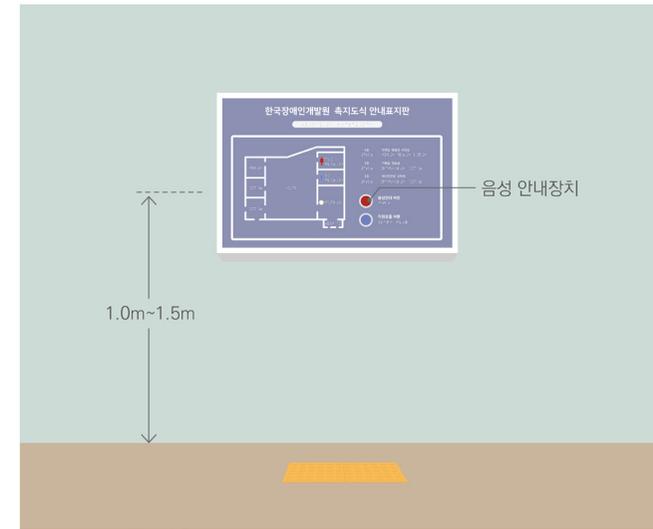
3.2.1 스탠드형 점자 안내판

주 출입구 외부 가까운 곳이나 접근하기 쉬운 곳에 스탠드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점자 블록과 연계하고 주변 음성 유도기에서 유도해 주는 등 주변 편의시설과 유기적으로 설치한다. 스탠드형 점자 안내판은 축지가 편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먼지나 이물질이 묻을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스탠드형 점자 안내판은 바닥에 고정해서 설치해야 한다.



3.2.2 벽면형 점자 안내판

주 출입구 외부나 화장실 출입구 등 접근하기 쉬운 곳 벽면에 부착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점자 블록과 연계하고 주변 음성유도기에서 유도해 주는 등 유기적으로 설치한다. 벽면에 설치하면 공간상 제약이 적고 청결 등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3.3 대상 시설별 설치 의무 여부

법률	구분	편의시설	
		유도 및 안내 설비	
장애인 등 편의법	공원	권장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슈퍼마켓 ·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음원 · 미용원 · 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권장
		대피소	권장
		공중화장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소(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3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00㎡ 이상만 해당한다)	
		공연장	의무
		안마시술소	권장

법률	구분		편의시설	
			유도 및 안내 설비	
장애인 등 편의법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권장	
	종교 시설	종교 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 이상만 해당한다)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의료 시설	병원·격리병원		의무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유치원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노유자 시설	도서관(10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노인 복지 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수련 시설	사회 복지 시설(장애인 복지 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생활권 수련 시설, 자연권 수련 시설		권장
	운동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숙박 시설	일반 숙박 시설(호텔, 여관)		
		관광 숙박 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권장
	공 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교정 시설	교도소·구치소		
	묘지 관련 시설	화장 시설, 봉안당(종교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광 휴게 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 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권장
		휴게소		권장
	장례식장			권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법률	구분		편의시설
			유도 및 안내 설비
교통 약자 법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무
	버스 정류장		권장
	철도 역사		의무
	도시철도 역사		의무
	환승 시설		의무
	공항 시설		의무
	항만 시설		의무
	광역전철 역사		의무
	보도		
	지하도 및 육교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권장

3.4 세부 기준

3.4.1 구성 및 내용

1) 공통 사항

- 점자 안내판은 주로 시설명과 안내 문구, 촉지 안내도, 총별 안내, 음성 안내 버튼 등으로 구성되며 안내 문구나 총별 안내, 음성 안내 버튼 등은 대상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점자 안내판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목자를 같이 표기한다.
- 점자 안내판의 상단에는 해당 시설의 명칭, 시설의 이름을 표기한다.
- 점자 안내판 내 촉지 안내도는 건축 설계 도면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실과 주요 편의시설 이외에는 표시를 생략한다.
- 촉지 안내도는 안내도 테두리, 건물 외형선, 유도 동선, 현 위치, 촉지 기호, 점자, 목자로 구성되며 각 요소별 내용은 '3.4.2 규격'과 같다.
- 촉지 안내도는 주요 실과 편의시설의 배치를 돌출된 선 과 면, 점자와 촉지 기호 등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 그 차이를 쉽고 뚜렷하게 구별하도록 한다.
- 촉지 안내도에 표시하는 정보는 시각장애인이 대상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와 위치 정보 및 이동 편의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대상 시설의 실제 정보와 동일하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영역 내에 점자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약자로 표기한다.
- 건물 구조가 복잡하여 간소화나 변형이 어려운 경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또는 단체에 촉지 안내도 시안을 검토받아 안내 기능을 보완한다.
- 촉지 안내도는 해당 층만 표시하고 해당 층 외의 표시는 하지 않는다.
- 촉지 안내도에서 건물의 복도는 사무실, 민원실, 화장실 등 실내 공간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질감을 달리한다.
- 촉지 안내도에서 건물의 출입문은 별도의 문 표시를 생략하고 해당 크기만큼 비워서 표시한다.
- 촉지 안내도 내 사무실 등 실명 점자는 해당 출입구(문)에서 가까운 곳에 표기한다.
- 이외의 내용은 '시각장애인용 촉지 안내도(SPS-KBUWEL001:5686) 단체 표준을 준수한다.



2) 공공건물

- (1) 외부 출입구(문), 사무실, 안내 데스크, 계단,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화장실 등 건물 이용에 필요한 주요 시설을 표시한다.
- (2) 시설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유도 동선을 표시한다.

3) 여객 시설

- (1) 외부 출입구, 화장실, 고객지원실, 내·외부 계단, 대합실,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개찰구, 자동발매기, 환급기 등 여객 시설 이용에 필요한 주요 시설을 표시한다.
- (2) 여객 시설 내 설치된 점자 블록을 기준으로 유도 동선을 표시한다.

4) 공원

- (1) 공원의 주 동선을 돌출된 선, 면 등으로 표시한다.
- (2) 공원이나 보도에 설치된 점자 블록을 기준으로 유도 동선을 표시한다.

5) 이 밖의 시설은 해당 시설의 기능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상기 대상 시설별 구성 및 문구를 준용한다.

3.4.2 규격

1) 점자 안내판 크기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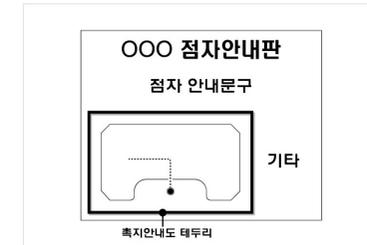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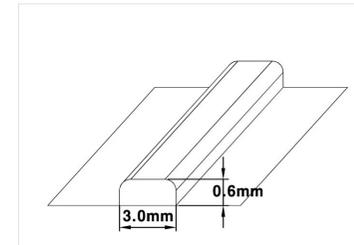
점자 안내판의 크기 규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단 문구와 촉지 안내도, 기타 안내, 음성 안내 버튼 등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한다. 단, 촉지 안내도의 크기는 A3(297×420밀리미터) 이내로 제작하되, 대상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해 A3 이내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검토를 받아 조정한다.

2) 점자 안내판 높이 규격

점자 안내판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점자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 안내 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 안내판의 중심선이 1.0~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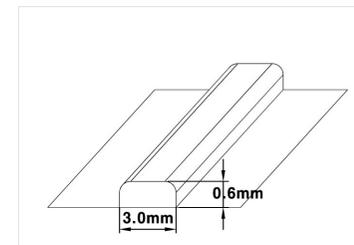
3) 촉지 안내도 규격

- (1) 촉지 안내도 테두리
 - ① 다른 선들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가능한 가장 높고, 굵은 돌출된 실선을 사용한다.
 - ② 실선 굵기는 3밀리미터 이상, 실선 높이는 0.6밀리미터 이상으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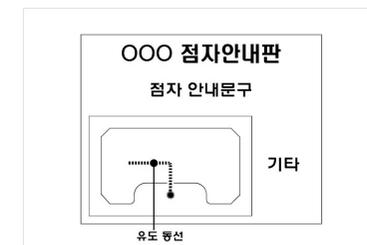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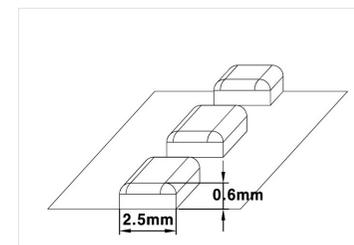
(2) 건물 외형선

- ① 건물의 형태 및 전반적인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촉지할 수 있는 돌출된 실선을 사용한다.
- ② 건물 외형선으로 표시된 주요 실과 편의시설 등은 건축 도면에 준하도록 표시하되 촉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하는 등 변형이 가능하다.
- ③ 공원, 보도, 산책로 등 건물 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도 건물 외형선 사용과 동일한 실선을 사용한다.
- ④ 실선 굵기는 2.5밀리미터 이상, 실선 높이는 0.6밀리미터 이상으로 표시한다.



(3) 유도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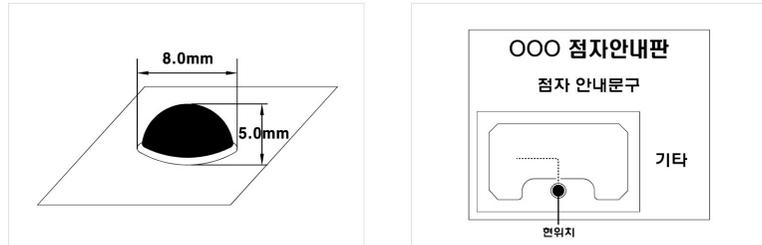
- ① 하나의 촉지 안내도에는 한 개의 유도 동선을 표시한다.
- ② 현 위치에서 종합안내소(또는 안내 데스크)까지 유도하기 위해 보행 동선을 방위에 맞게 돌출된 점선으로 표시한다. 단, 여객 시설, 공원 등 선형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대상 시설은 점자 블록을 기준으로 유도 동선을 표시한다.
- ③ 종합안내소가 없을 경우에는 안내가 가능한 곳으로 대체하여 유도 동선을 표시한다.
- ④ 돌출된 점선의 굵기는 2.5밀리미터 이상, 높이는 0.6밀리미터 이상, 간격은 3밀리미터 내외로 표시한다.
- ⑤ 화장실 촉지 안내도는 유도 동선을 생략한다.



(4) 촉지 안내도 현 위치

- ① 현 위치는 촉지 안내도에서 가장 쉽게 인지되어야 하는 요소로 다른 촉지 표시와 구별되도록 표시한다.
- ② 현 위치는 시각장애인의 촉지 안내도 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하단부에 배치한다. 단, 건물의 형태에 따라 하단 배

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검토를 받아 조정한다.
 ③ 현 위치의 높이는 5밀리미터 이상, 지름은 8밀리미터 이상이 되는 반구형으로 표시한다.



(5) 기타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각장애인용 촉지 안내도' 단체 표준을 준수한다.



3.5 제작

3.5.1 주의사항

- 1) UV 프린터(적층식)로 제작할 때는 적층의 횟수를 조절하여 올바른 점 높이를 구현하고 내구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 2) 타공으로 제작할 때는 점을 찍기 위한 점들의 치수 오차를 주의한다. 또한 점의 크기는 재질과 두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제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
- 3) 타공된 반원 안이 비어 있는 경우 점자 돌출부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0.3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로 제작한다.

3.6 설치

3.6.1 일반사항

- 1) 점자 안내판은 주 출입구 외부에서 가깝고,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설치한다.
- 2) 점자 안내판은 주 출입구로 들어가는 방향의 입면 방향에 실제 시설 내부 배치와 동일한 방위로 점자 안내판을 설치한다.
- 3) 벽면형 점자 안내판은 부착식으로 설치하되, 떨어짐 방지를 위해 실리콘 마감이나 별도의 프레임 시공을 추가한다.
- 4) 스탠드형 점자 안내판은 이동 방지를 위해 하부판에 고정 장치를 설치하거나, 바닥에 매립 설치한다. 방법 등의 이유로 시설 폐쇄 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이동 설치로 운영할 경우, 점자 안내판의 설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위차 확인용 바닥 마감을 추가한다.

3.6.2 대상 시설별 설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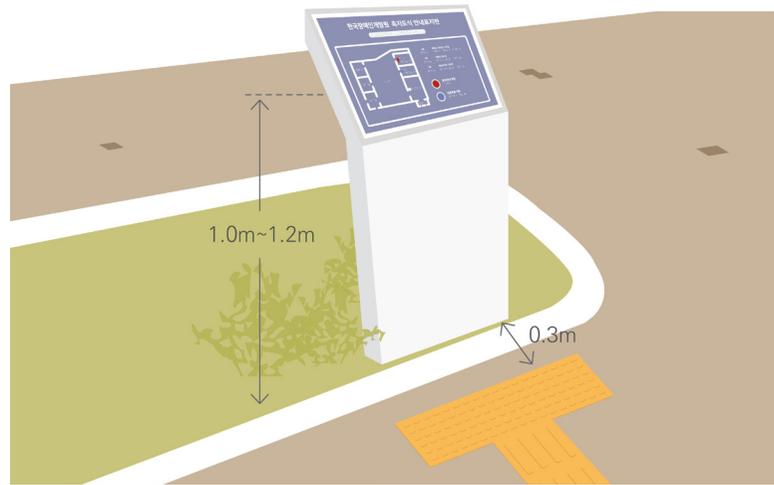
1) 공공건물

주 출입구 외부에서 가깝고,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설치한다.



2) 공원

공원 주 진입로에서 가까운 곳이나, 산책로 중 중요 지점에 설치한다.



3.7 유지 관리 및 보수

- 3.7.1 시설 운영상 구조나 실명이 변경된 경우 점자 안내판의 내용도 즉시 변경한다.
- 3.7.2 관내 청결 관련 시설 관리 대상에 점자 안내판을 포함시켜 일 1회 이상 표면을 청소한다.
- 3.7.3 점자 안내판의 방위는 실제 건물 배치와 일치해야 하므로 이동식 점자 안내판은 고정 장치를 설치하고 방위 및 위치가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3) 여객 시설

- (1) 여객 시설 외부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 (2) 여객 시설의 외부 출입 구조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지상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 대합실 층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4) 기타 시설

이외의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1)부터 4)의 각 지침을 적용한다.

04

손잡이 점자 표지판

1. 기능
2. 종류
3. 대상 시설별 설치 의무 여부
4. 세부 기준
5. 제작
6. 설치
7. 유지 관리 및 보수



04

손잡이 점자 표지판

4.1 기능

손잡이 점자 표지판은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점자 편의시설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복도의 손잡이에 점자가 표기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방향과 층수, 목적지 정보를 제공한다.

4.2 종류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복도 등 매개 시설, 내부 시설 손잡이에 설치한다.

4.3 대상 시설별 설치 의무 여부

법률	구분	편의시설			
		주 출입구높이 차이 제거	복도 손잡이	계단 손잡이	
장애인 등 편의법	공원	의무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슈퍼마켓 ·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의무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공중화장실	의무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지역아동센터(3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공연장	의무		의무
		안마시술소	의무		권장

법률	구분	편의시설			
		주 출입구높이 차이 제거	복도 손잡이	계단 손잡이	
장애인 등 편의법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집회장	의무		의무
		전시장, 동 · 식물원	의무		의무
	종교 시설	종교 집회장(교회 · 성당 · 사찰 · 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판매 시설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료 시설	병원 · 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유치원		의무		의무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도서관(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노유자 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 아동복지 시설)	의무		의무
		노인 복지 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사회 복지 시설(장애인 복지 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 시설, 자연권 수련 시설	의무		의무
	운동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숙박 시설	일반 숙박 시설(호텔, 여관)	의무		권장
		관광 숙박 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의무		의무
공 장		의무		권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교정 시설	교도소 · 구치소	의무		의무	
모지 관련 시설	화장 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무		권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 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권장	
	휴게소	의무		권장	
장례식장		의무		의무	
아파트		의무		의무	
연립주택		의무		권장	
다세대주택		의무		권장	
기숙사		의무		권장	

법률	구분	편의시설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복도 손잡이	계단 손잡이
교통약자법	선박		의무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무	의무	의무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의무	의무	의무
	도시철도 역사	의무	의무	의무
	환승 시설	의무	의무	의무
	공항 시설	의무	의무	의무
	항만 시설	의무	의무	의무
	광역전철 역사	의무	의무	의무
	보도			
	지하도 및 육교			의무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의무		권장/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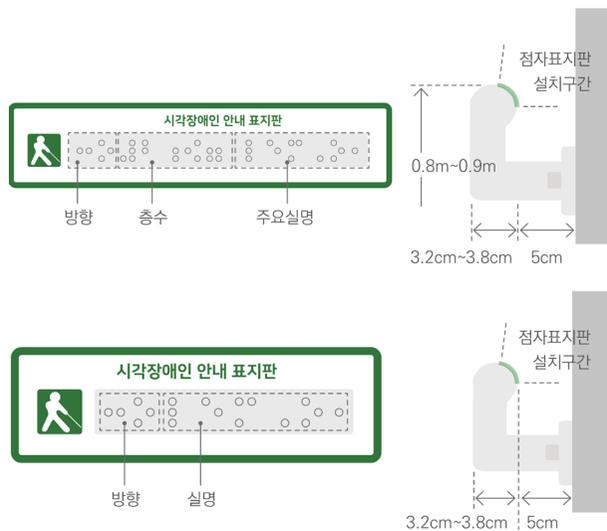
편의시설의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는 경사로의 설치를 의미하며, 에스컬레이터는 상기의 계단 손잡이와 동일하다.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의무, 권장 여부가 달라진다.

4.4 세부 기준

4.4.1 구성 및 문구

1) 공통 사항

(1)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손잡이 점자 표지판은 화살표와 층수, 주요 실명 등 목적지 정보를 표기한다.



2) 공공건물의 편의시설별 문구

	구분	점자 표기 문구
공공건물	계단(하부)	화살표 ○층 ○○○, □□□(주요 시설 등)
	계단(상부)	화살표 ○층 ○○○, □□□(주요 시설 등)
	복도 손잡이	화살표 ○○○(주요 시설 등)
	경사로 (들어가는 방향)	화살표 ○층 ○○○, □□□(주요 시설 등) 또는 화살표 ○○구청 본관 주 출입구
	경사로 (나가는 방향)	화살표 ○층 ○○○, □□□(주요 시설 등) 또는 화살표 좌측 본관 방면, 우측 별관 방면

3) 여객 시설의 편의시설별 문구

	구분	점자 표기 문구
여객 시설	나가는 출입구 손잡이	화살표 ○번 출구 ○○○(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문구와 동일)방면
	들어가는 출입구 손잡이	화살표 ○호선 ○○역 ○번 출구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나가는 손잡이	화살표 지하(지상)○층 대합실 나가는 곳(가는 곳)
	승강장 가는 손잡이 (상대식)	화살표 ○○, □□(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문구와 동일) 방면(타는 곳)
	승강장 가는 손잡이 (섬식)	화살표 좌측 ○○방면 우측 ○○(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문구와 동일) 방면 (타는 곳)
	환승 통로	화살표 ○호선 ○○(역사 내 표지판) 방면 갈아타는 곳

4) 지하도, 육교,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의 편의시설별 문구

구분	점자 표기 문구
육교 손잡이(하부)	화살표 ○○육교 □□방면 가는 곳
육교 손잡이(상부)	화살표 □□방면 가는 곳
지하도 손잡이(지상)	화살표 ○○지하도 □번 출구
지하도 손잡이(지하)	화살표 ○번 출구 □□□, △△△방면

5) 이외의 시설은 해당시설의 기능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상기 대상 시설별 구성 및 문구를 준용하도록 한다.

4.4.2 규격

1) 점자 표지판 규격

손잡이 점자 표지판은 세로는 손잡이 둘레 길이 + 1센티미터 정도의 길이로 하고, 가로 길이는 표기 내용의 양에 따라 길이를 조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4.5 제작

4.5.1 주의 사항

- 1) 점의 크기는 재질과 두께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제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
- 2) 손잡이 점자 표지판은 동그랗게 말아 설치하므로 점간, 자간뿐만 아니라 줄간 치수도 주의하도록 한다.
- 3) 설치 시 판 자체의 형태가 동그랗게 말리는 등 변형이 발생하므로 UV 프린터로 제작한 표지판은 사용 기간이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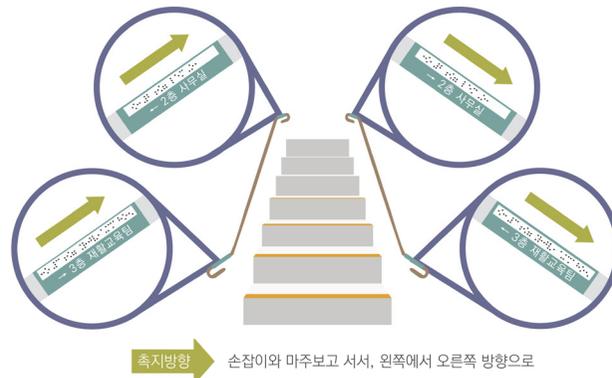
4.6 설치

4.6.1 일반 사항

- 1) 손잡이 점자 표지판은 리벳, 나사 피스 등의 고정 장치 설치로 마감하여 들뜸 없이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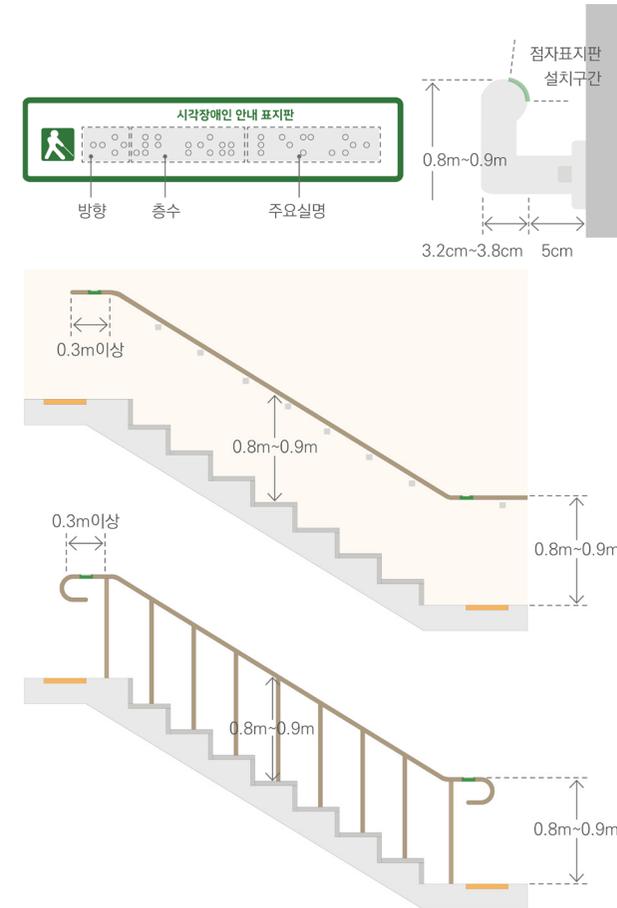
- 2) 스티커, 본드, 양면 접착, 테이프 등 부착 시공으로 마감할 경우 점자 표지판 재질 자체의 탄성과 연성으로 손잡이에서 떨어지거나 들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름에는 고온으로 접착제가 녹아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 마감한다.
- 3) 손잡이 점자 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복도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 0.3미터 수평 손잡이 중간에 설치한다.
- 4) 현장 조건상 계단과 경사로 수평 손잡이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설치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 시설의 복도와 여객 시설 통로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한다.
- 6) 점자 표지판은 검지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촉지하므로 벽면 쪽으로 15°~30° 기울여 시공한다.(난간에 고정된 손잡이인 경우는 난간 쪽으로 15°~30° 기울임)



4.6.2 대상 시설별 세부 설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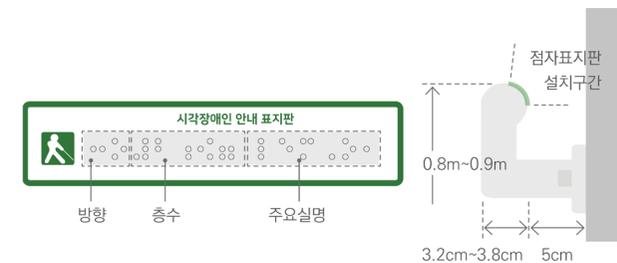
1)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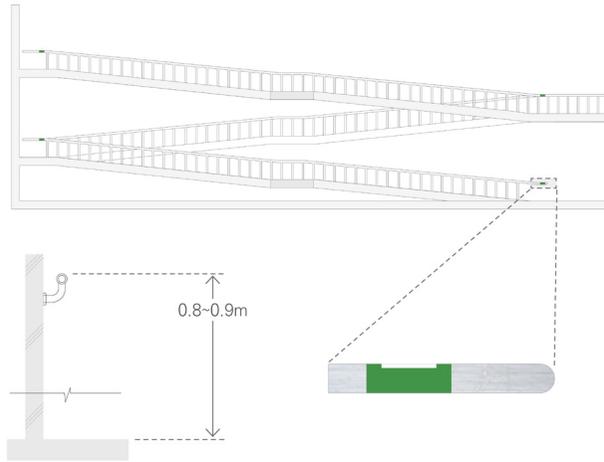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 수평 손잡이에 위치 정보를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설치하되 단순 굴절 지점인 계단참 부분은 설치를 생략한다. 단 계단참에서 새로운 분기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점자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2)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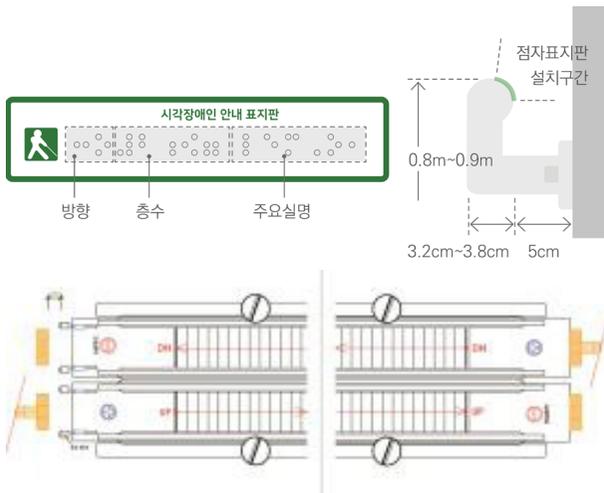
경사로 시작과 끝의 수평 손잡이에 위치 정보를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설치한다. 경사로 참 등 단순 굴절 지점은 설치를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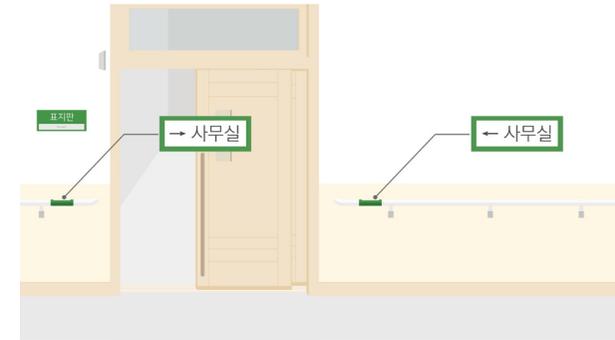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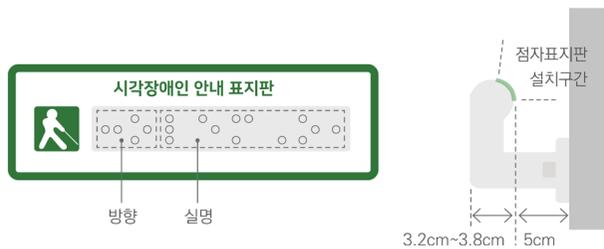
3)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수평 고정 손잡이가 있을 경우 탑승 방향을 기준으로 손잡이 시작부분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한다.



4) 복도, 통로

복도나 통로 시작과 끝나는 지점의 손잡이에는 해당 위치 정보를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5) 이외의 시설은 해당 시설의 기능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상기 대상 시설별 구성 및 문구를 준용한다.

4.7 유지 관리 및 보수

4.7.1 위치 정보나 공간 정보가 변경되면 손잡이 점자 표지판의 내용도 즉시 변경한다.

4.7.2 안내 청결 관련 시설 관리 대상에 손잡이 점자 표지판을 포함시켜 일 1회 이상 표면을 청소한다

4.7.3 점자 표지판의 점자가 일부 소실되거나 마모되어 인지하기 힘든 경우 즉시 새것으로 교체한다.

05

벽면 점자 표지판

1. 기능
2. 종류
3. 대상 시설별 설치 의무 여부
4. 세부 기준
5. 제작
6. 설치
7. 유지 관리 및 보수



05

벽면 점자 표지판

5.1 기능

벽면 점자 표지판은 시각장애인에게 실내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점자 편의시설로 실내 출입문 벽면과 화장실에 점자가 표기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내부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5.2 종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실내 출입문 점자 표지판과 화장실의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화장실 점자 표지판 등이 있다.

5.3 대상 시설별 설치 의무 여부

법률	구분	편의시설		
		출입구(문)	위생 시설	
장애인 등 편의법	공원	의무	의무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무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지역아동센터(3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공연장	의무	의무
		안마시술소	의무	권장

법률	구분	편의시설		
		출입구(문)	위생 시설	
장애인 등 편의법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집회장	의무	의무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종교 시설	종교 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료 시설	병원·격리병원	의무	의무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유치원	의무	의무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도서관(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노유자 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 시설)	의무	의무
		노인 복지 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사회 복지 시설(장애인 복지 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 수련 시설, 자연권 수련 시설	의무	의무
	운동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숙박시설	일반 숙박 시설(호텔, 여관)	의무	권장
		관광 숙박 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의무	의무
	공 장		의무	의무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교정 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모지 관련 시설	화장 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관광 휴게 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 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휴게소	의무	의무	
장례식장		의무	의무	
아파트		의무	권장	
연립주택		의무	권장	
다세대주택		의무	권장	
기숙사		의무	의무	

범률	구분	편의시설	
		출입구(문)	위생 시설
교통 약자 법	철도차량		의무
	항공기		
	선박		의무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무	의무
	버스 정류장		
	철도 역사	의무	의무
	도시철도 역사	의무	의무
	환승 시설	의무	의무
	공항 시설	의무	의무
	항만 시설	의무	의무
	광역전철 역사	의무	의무
	보도		
	지하도 및 육교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의무	의무	

지하도 상가의 경우 위생 시설의 벽면 점자 표지판은 지하도 상가의 용도·규모에 따라 설치 의무·권장 여부가 달라진다.

5.4 세부 기준

5.4.1 구성 및 문구

1) 공통 사항

벽면 점자 표지판은 일반 표지판 정보에 준하여 해당 실내 공간에 관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한다.

2) 실내 출입문

시설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실내에 관한 정보를 점자로 제공한다. 외부인 출입 금지 등 관리자 동선인 경우 설치를 생략한다.

3) 화장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남녀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점자 표지판을 설치한다. 일반 화장실과 장애인 사용 가능 화장실이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점자 표지판은 일반 화장실에 설치하며 장애인 화장실에는 설치를 생략한다.

4) 이외의 시설은 해당 시설의 기능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상기 대상 시설별 구성 및 문구를 준용한다.

5.4.2 규격

벽면 점자 표지판의 크기는 점자 크기 규격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목자나 픽토그램 등이 병기될 수 있도록 크기를 설정한다.

5.5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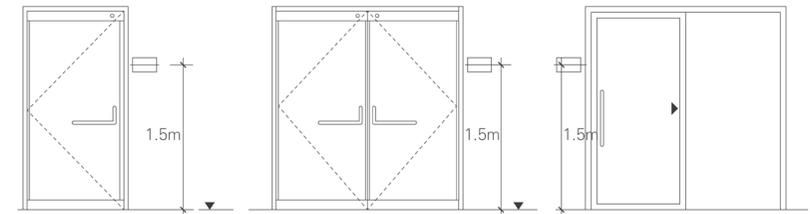
5.5.1 주의 사항

점의 크기는 재질과 두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표지판 제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

5.6 설치

5.6.1 일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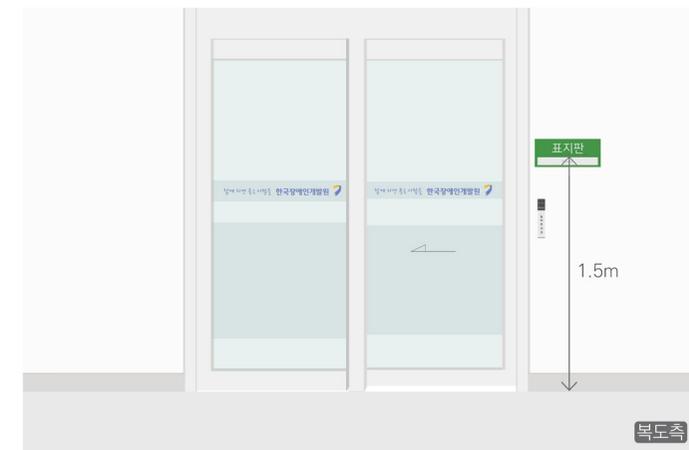
- 1) 벽면 점자 표지판은 떨어지지 않게 벽면에 강력 본드나 실리콘으로 부착한다.
- 2) 출입문의 문손잡이 쪽(자동문의 경우 누름 버튼 쪽) 벽면에 설치한다.
- 3) 점자 표지판은 바닥면으로부터 점자 표지판 중심선을 1.5미터 높이로 설치하고, 가급적 문틀에 가깝게 설치한다.



5.6.2 문 형태별 설치 방법

1) 자동문

자동문 누름 버튼 쪽 벽면에 1.5미터 정도 높이에 실명 점자 표지판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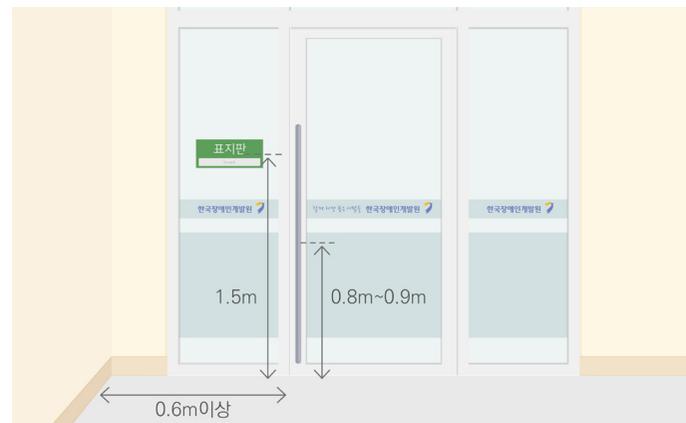
2) 미닫이문

미닫이문 손잡이 쪽 벽면 1.5미터 정도 높이에 실명 점자 표지판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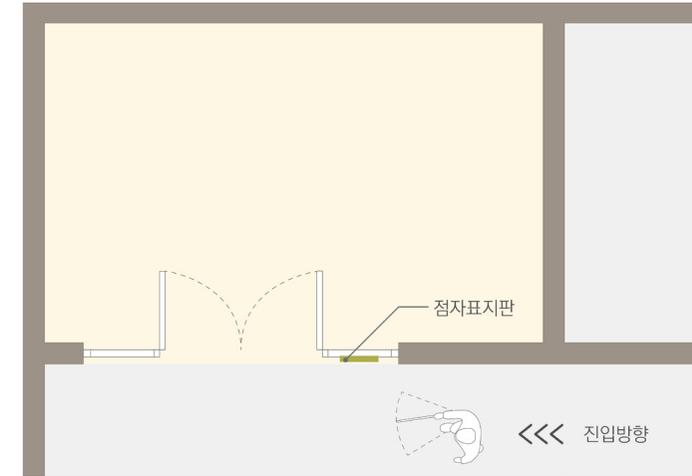
2) 외여닫이문

외여닫이문 손잡이 쪽 벽면 1.5미터 정도 높이에 실명 점자 표지판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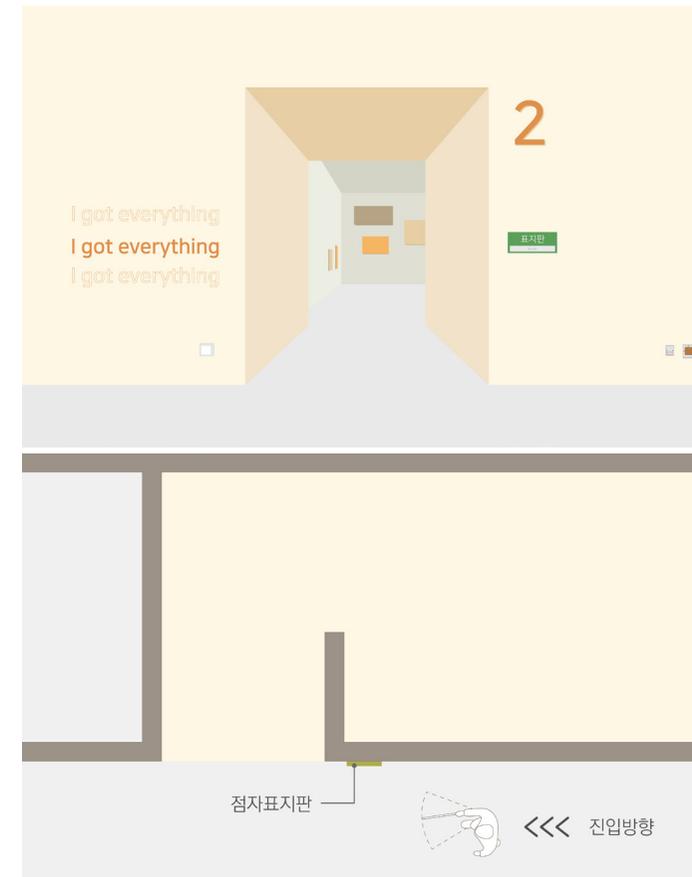
3) 양개문

양개문인 경우 고정문이 아닌 문, 점자 표지판 축지가 용이한 문, 우측 문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점자 표지판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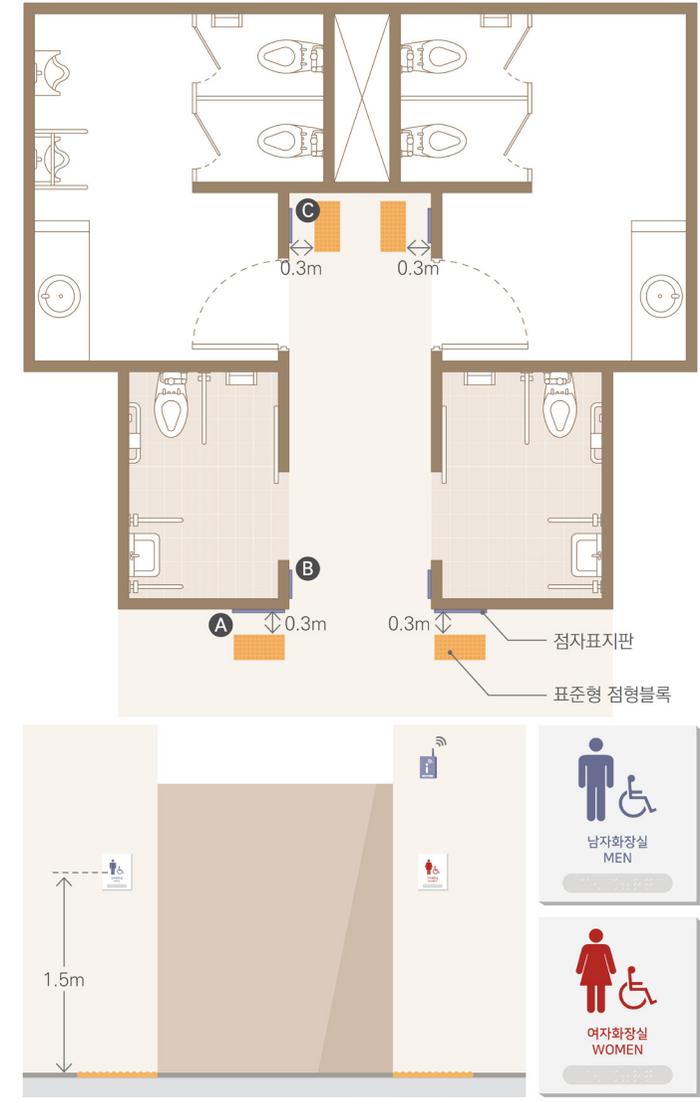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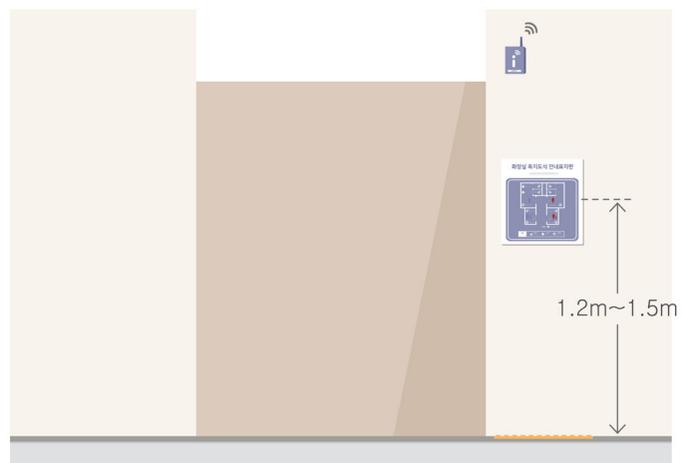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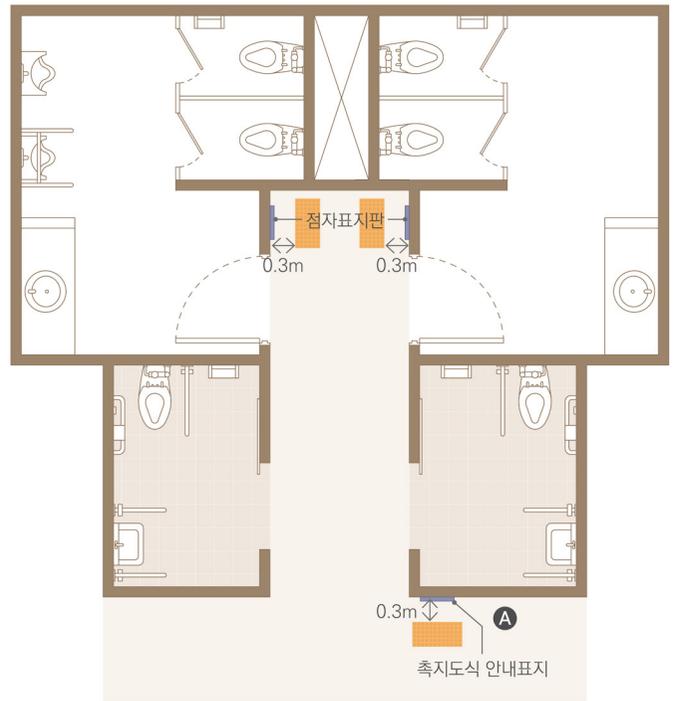
4) 출입구

출입구 벽면 1.5미터 정도 높이에 실명 점자 표지판을 설치한다.



5) 화장실

화장실의 점자 표지판은 남녀를 구별하기 위해 일반 화장실 전면에 각각 설치한다. 이때 남녀 화장실 각 출입문이 복도에 붙어 있지 않고 통로 진입 후 나뉘는 경우 복도 면에 남녀 화장실 위치에 관한 정보를 좌우로 제공하거나,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여 남녀 화장실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6) 기타

이외의 시설은 해당 시설의 기능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상기 대상 시설별 구성 및 문구를 준용한다.

5.7 유지 관리 및 보수

5.7.1 시설 운영상 구조나 실명이 변경된 경우 점자 표지판의 내용도 즉시 변경한다.

5.7.2 관내 청결 관련 시설 관리 대상에 손잡이 점자 표지판을 포함시켜 일 1회 이상 표면을 청소한다.

5.7.3 점자 표지판의 점자가 일부 소실되거나 마모되어 인지하기 힘든 경우 즉시 새것으로 교체한다.

06

승강기 점자 표지판

1. 기능
2. 종류
3. 대상 시설별 설치 의무 여부
4. 세부 기준
5. 제작
6. 설치
7. 유지 관리 및 보수



06

승강기 점자 표지판

6.1 기능

승강기 점자 표지판은 시각장애인에게 승강기 조작 버튼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승강기 호출 버튼과 조작반에 점자를 표기하여 상하, 층수, 개폐, 호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6.2 종류

6.2.1 일체형 점자 표지판

버튼 일체형으로 버튼 자체에 점자를 표기한 형태이다.

6.2.2 부착형 점자 표지판

버튼 우측이나 하단에 점자가 표기된 판을 부착한 형태이다.

6.3 대상 시설별 설치 의무 여부

법률	구분	승강기	
장애인 등 편의법	공원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슈퍼마켓 ·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지역아동센터(3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법률	구분	승강기	
장애인 등 편의법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공연장	의무
		안마시술소	권장
	문화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집회장	의무
		전시장, 동 · 식물원	의무
	종교 시설	종교 집회장(교회 · 성당 · 사찰 · 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판매 시설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료 시설	병원 · 격리병원	의무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유치원	의무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도서관(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노유자 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 아동복지 시설)	의무
		노인 복지 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사회 복지 시설(장애인복지 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 수련 시설, 자연권 수련 시설	의무
	운동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숙박 시설	일반 숙박 시설(호텔, 여관)	권장
		관광 숙박 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의무
	공 장		권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권장	
	운전학원	의무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교정 시설	교도소 · 구치소	의무	
묘지 관련 시설	화장 시설, 봉안당(종교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권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 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권장	
	휴게소	권장	
장례식장		의무	
아파트		의무	
연립주택		권장	
다세대주택		권장	
기숙사		권장	

법률	구분	승강기
교통약자법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무
	버스 정류장	
	철도 역사	의무
	도시철도 역사	의무
	환승 시설	의무
	공항 시설	의무
	항만 시설	의무
	광역전철 역사	의무
	보도	
	지하도 및 육교	의무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권장/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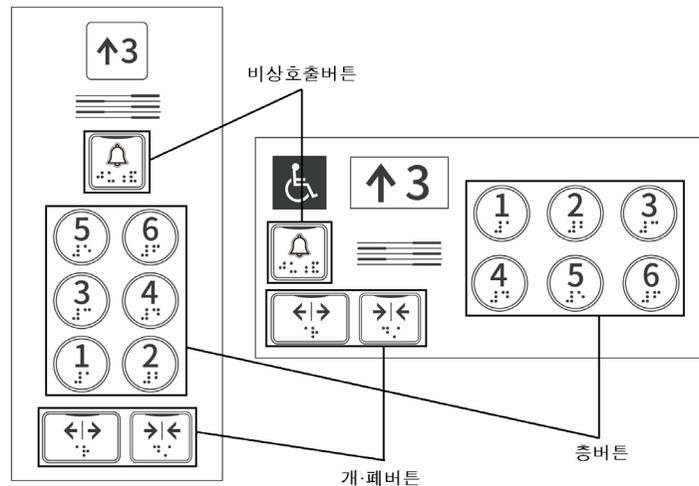
휴게실은 승강기 점자 표시판 설치가 권장이며, 지하도 상가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승강기 점자 표시판 설치 의무·권장 여부가 달라진다.

6.4 세부 기준

6.4.1 구성 및 문구

1) 공통 사항

승강기 모든 버튼의 점자는 해당 버튼과 동일하게 표기한다. 승강기 호출 버튼(상하 버튼)과 승강기 카 내 가로 조작반과 세로 조작반의 모든 버튼에 점자를 표기한다.



2) 버튼별 문구

- ① 호출 버튼
승강기를 호출하기 위한 버튼 중 ↑버튼은 '상', ↓버튼은 '하'로 점자 표기 한다.
- ② 조작반 버튼
층 버튼은 해당 층수를 표기하고 열림 버튼은 '개', 닫힘 버튼은 '폐'로 표기하며, 비상 호출 버튼은 '호출'로 표기한다.

6.4.2 규격

1) 표시판 규격

일체형 표시판은 버튼을 제작할 때 점자도 동시에 제작된다. 부착형 표시판은 승강기 조작반의 크기를 고려하되 해당 버튼에 가깝게 설치될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한다.

2) 이외의 승강기 점자 지침은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KS B 6895:2014)을 준용한다.

6.5 제작

6.5.1 재질

- 1) 일체형 점자 표시판은 승강기 버튼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한다.
- 2) 부착형 점자 표시판은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제작한다. 타공식 점자로 제작할 경우 내구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소 두께인 0.3밀리미터 이상으로 제작한다. 또한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손을 뿔 수 있는 재질은 사용하지 않고 위생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6.5.2 색상 및 마감

버튼과 같은 색상으로 마감하여 제작한다.

6.5.3 주의사항

- 1) 점의 크기는 재질과 두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제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
- 2) 금형 제작 시 점자 규격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6.6 설치

6.6.1 일반 사항

- 1) 일체형 점자 표시판은 해당 버튼 내에 묵자와 점자를 병기한다.

- 2) 부착형 점자 표지판은 점자만 표기한 별도의 표지판을 해당 버튼의 하단이나 우측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한다.
- 3) 승강기 버튼의 점자는 일체형인 경우 모두 일체형으로 설치하며, 부착형인 경우 모두 부착형으로 통일성 있게 설치한다.
- 4) 일체형 점자 표지판을 교체해야 할 경우 버튼 자체를 교환 설치한다.
- 5) 부착형의 경우 강력 접착제로 부착 시공한다.
- 6) 이외의 승강기 조작을 위한 버튼이나 센서가 있을 경우 해당 용도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점자를 표기한다.



6.7 유지 관리 및 보수

- 6.7.1 층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승강기 점자 표지판의 내용도 즉시 변경한다.
- 6.7.2 안내 청결 관련 시설 관리 대상에 승강기 버튼과 점자 표지판을 포함시켜 일 1회 이상 표면을 청소한다.
- 6.7.3 점자가 일부 소실되거나 마모되어 인지하기 힘든 경우 즉시 새것으로 교체한다.



07

기타 점자 편의시설

1. 기능
2. 종류
3. 대상 시설별 설치 의무 여부
4. 세부 기준
5. 제작
6. 설치
7. 유지 관리 및 보수



07

기타 점자 편의시설

7.1 기능

각종 수도꼭지의 레버, 음향 신호기의 수동 조작 버튼,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조작반 등에 점자를 표기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동작 방법과 용도, 기능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7.2 종류

수도꼭지 레버, 음향 신호기의 수동 조작 버튼,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조작반 등에 점자가 자체 포함된 일체형 버튼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다.

7.2.1 수도꼭지



일체형 점자 수도꼭지



부착형 점자 수도꼭지

7.2.2 음향 신호기 버튼



7.2.3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7.3 대상 시설별 설치 의무 여부

법률	구분	편의시설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	욕실 수도꼭지	샤워실 수도꼭지	판매기	
장애인 등 편의법	공원	의무			의무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슈퍼마켓 ·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권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무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소(산후조리원)	권장			
		지역아동센터(3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공연장	의무		의무	
		안마시술소	권장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집회장	권장			
		전시장, 동 · 식물원	권장			권장
	종교 시설	종교 집회장(교회 · 성당 · 사찰 · 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판매 시설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10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의료 시설	병원 · 격리병원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권장			
		유치원	권장			
		교육원 · 직업훈련소 · 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도서관(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노유자 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 아동복지 시설)	권장			
		노인 복지 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권장	권장	권장	
		사회 복지 시설(장애인복지 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 수련 시설, 자연권 수련 시설	의무		권장		
운동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권장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법률	구분	편의시설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	욕실 수도꼭지	샤워실 수도꼭지	판매기	
장애인 등 편의법	숙박 시설	일반 숙박 시설(호텔, 여관)	권장			
		관광 숙박 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의무	권장		
	공 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권장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교정 시설	교도소 · 구치소	의무			권장
	묘지 관련 시설	화장 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권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 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권장			권장
	관광 휴게 시설	휴게소	권장			권장
	장례식장		의무			권장
	아파트		권장	권장	권장	
	연립주택		권장	권장	권장	
	다세대주택		권장	권장	권장	
	기숙사		의무	권장	권장	
	교통 약자 법	여객자동차터미널	권장			의무
		버스 정류장				
		철도 역사	권장			의무
		도시철도 역사	권장			의무
		환승 시설	권장			의무
		공항 시설	권장			의무
		항만 시설	권장			의무
광역전철 역사		권장			의무	
보도						
지하도 및 육교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권장			권장/-		

모든 음향 신호기의 수동 조작 버튼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규격서(경찰청, 2017. 3. 31.) 지침에 따라 상단과 하단에 점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휴게실은 판매기 점자 표시판 설치 권장 대상이며, 지하도 상가의 판매기 점자 표시판은 설치 의무·권장 대상이 아니다.

7.4 세부 기준

7.4.1 구성 및 문구

- 1) 수도꼭지의 형태가 레버식인 경우 레버 조작에 따른 냉수와 온수 방향을 점자로 표기한다. 레버 조작 방향은 화살표로 표기하고, 온수는 '온', 냉수는 '냉'으로 표기한다.
- 2) 음향 신호기 수동 조작 버튼의 하단 중앙부에는 '신호기 버튼'을 점자로 표기하며, 상단 중앙부에는 고장 신고 전화번호를 점자로 표기한다.
- 3)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 버튼과 투입구, 발급구에는 품목·금액·목적지, 투입하는 곳과 발급되는 곳 등을 점자로 표기한다.

7.4.2 규격

- 1) 수도꼭지 점자 표지판을 수전 레버 크기 안에 점자를 표기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한다.
- 2) 음향 신호기 버튼 점자 표지판은 음향 신호기 버튼 합체의 크기 안에 점자를 표기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한다.
- 3)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점자 표지판은 조작 버튼과 투입구, 발급구에 가깝게 설치할 수 있고, 다른 버튼이나 투입구와 혼동되지 않는 크기로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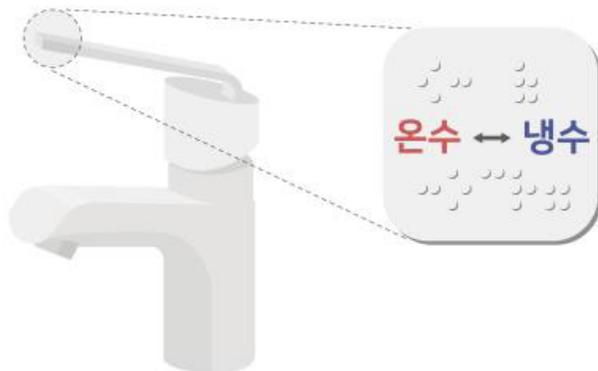
7.5 제작

7.5.1 재질

- 1) 점자 표지판을 일체형으로 제작할 경우 편의시설이나 제품의 표면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한다.
- 2) 부착형 점자 표지판은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한다. 타공식 점자로 제작할 경우 내구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소 두께인 0.3밀리미터 이상으로 제작한다. 또한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손을 뻗 수 있는 재질은 사용하지 않고 위생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7.5.2 색상 및 마감

- 1) 수도꼭지 점자 표지판
습윤 상태에서도 촉지 가독성이 좋은 재질로 설치한다.



2) 음향 신호기 수동 조작 버튼

점자 표지판의 색상은 음향 신호기 수동 조작 버튼 합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설치하거나 일체형 점자로 표기한다.



3)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표면과 동일한 마감으로 설치한다.

7.5.3 주의 사항

점의 크기는 재질과 두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제작 시 주의가 필요하다.

7.6 설치

7.6.1 일반 사항

일체형은 촉지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부착형은 강력 접착제로 부착 시공한다.

7.6.2 편의시설별 설치 방법

1) 수도꼭지 부착형 점자 표지판

방수에 강한 접착제를 사용하며, 수도꼭지나 수전의 표면이 곡선인 사례가 많으므로 점자 표지판 전체 면적이 수도꼭지에 전면 밀착할 수 있도록 부착한다.

2) 음향 신호기 수동 조작 버튼 부착형 점자 표지판

방수에 강한 접착제를 사용하며, 점자 표지판이 수동 조작 버튼 합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부착형 점자 표지판

조작 버튼과 투입구, 발급구에 가까운 곳이 하단이면 하단, 우측이면 우측으로 통일성 있게 설치한다.

7.7 유지 관리 및 보수

7.7.1 목자 표기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점자의 내용도 즉시 변경한다.

7.7.2 관내 청결 관련 시설 관리 대상에 세면대와 욕실 세면대,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버튼을 포함시켜 일 1회 이상 표면을 청소한다.

7.7.3 음향 신호기 수동 조작 버튼의 점자는 관할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분기별로 점검하여 유지 관리 하도록 한다.

7.7.4 점자가 일부 소실되거나 마모되어 인지하기 힘든 경우 즉시 새것으로 교체한다.



부록

부록1 점자 편의시설 관련 내용 정리

부록2 점자 편의시설 설치 사례집

부록3 점자일람표

부록4 점자 예시



08

부록 1. 점자 편의시설 관련 내용 정리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다.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

- (2) 건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 이름을 표기할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라.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

- (3)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장애인용 승강기

다. 이용자 조작설비

-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다. 손잡이

- (3) 수평 이동 손잡이 전면에는 1m 이상의 수평 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 고정 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다. 손잡이

-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 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3) 기타 설비

-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세면대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가.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 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 안내 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m 내지 1.2m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 안내 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m 내지 1.2m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 안내 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m 내지 1.5m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라. 기타 설비

(1)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다. 기타 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 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교통수단

나. 철도차량

6) 장애인 전용 화장실

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문은 미닫이식으로 하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선박

8) 출입구 통로

나) 통로에는 바닥면에서 0.9m 이상의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자 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여객 시설

나. 주 출입구

3)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

나) 여객 시설의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에는 방의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통로

3) 손잡이

마)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경사로

3) 손잡이

다)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 기준은 라목3)을 적용한다.

바. 승강기

3) 이용자 조작설비

라)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사. 에스컬레이터

3) 손잡이

다) 수평 이동 손잡이 전면에는 1m 이상의 수평 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 고정 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아. 계단

4)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

다)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에 관한 그 밖의 세부 기준은 라목3)을 적용한다.

자. 장애인전용화장실

1) 일반사항

마)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세면대

라) 수도꼭지에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카. 유도 및 안내 시설

1) 일반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 매표소·판매기·음료대

6)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 버튼에는 품목·금액 및 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머. 대기시설

5) 안내판은 점자 안내 및 음성 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3. 도로

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3)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제2호 라목3)을 준용한다.

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그 용도·규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마.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 신호기

2) 수동식 음향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 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점자법 한국 점자 규정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한국 점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한국 점자는 한 칸을 구성하는 점 여섯 개(세로 3개, 가로 2개)를 조합하여 만드는 예순세 가지의 점형으로 적는다.

제2항 한 칸을 구성하는 점의 번호는 왼쪽 위에서 아래로 1점, 2점,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점, 5점, 6점으로 한다.

제3항 글자나 부호를 이중으로 적지 않도록 여기에서 정한 한국 점자를 표준 점자로 정한다.

제4항 한글 이외의 점자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점자와 일치하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한국 점자는 풀어쓰기 방식으로 적는다.

제6항 한국 점자는 책의 부피를 줄이고, 정확하고 빠르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7항 한국 점자의 물리적 규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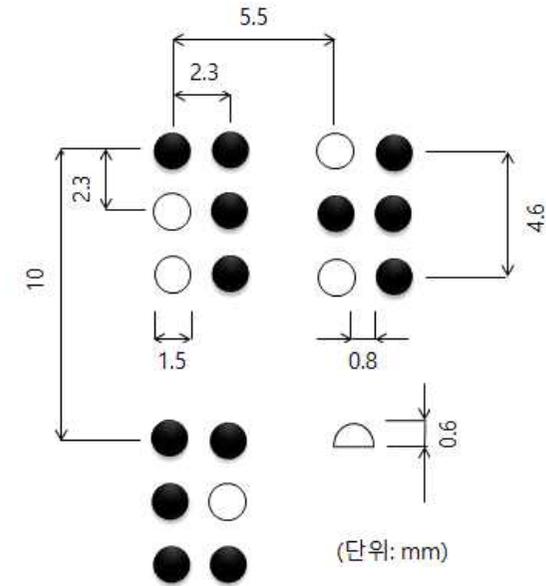
1. 점 높이: 반구형 점의 중심점에서 밑면까지의 거리
2. 점 지름: 반구형 점의 밑면 중심을 지나 점의 둘레와 만나는 직선거리
3. 점간 거리: 점간 내 한 점의 중심점에서 인접한 다른 점의 중심점까지의 거리
4. 자간 거리: 수평으로 나열된 두 점간에서 같은 점 번호에 해당하는 두 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5. 줄간 거리: 수직으로 나열된 두 점간에서 같은 점 번호에 해당하는 두 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6. 한국 점자 사용 규격
 - 가. 점 높이: 최솟값 0.6mm 최댓값 0.9mm
 - 나. 점 지름: 최솟값 1.5mm 최댓값 1.6mm
 - 다. 점간 거리: 최솟값 2.3mm 최댓값 2.5mm
 - 라. 자간 거리
 - 종이, 스티커: 최솟값 5.5mm 최댓값 6.9mm
 - 피브이시(pvc): 최솟값 5.5mm 최댓값 7.3mm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최솟값 5.5mm 최댓값 7.6mm

기타 재질: 위의 규격을 준용하여 사용

마. 줄간 거리: 최솟값 10.0mm 최댓값 정하지 않음

바. 점자 규격 그림(예시)



4. 시각장애이용 촉지 안내도 단체 표준(해설서제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단체 표준

SPS-KBUWEL001-5686

시각장애이용 촉지 안내도

The tactile maps for the blind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및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양각된 선과 면, 점자 등으로 표시한 안내도에 대한 것이다. 동 안내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내시설 중 유도 및 안내설비에 해당되며 시각장애인이 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질 및 구성, 표시, 규격 등을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 포함)을 적용한다.

KS B 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
KS S ISO 7001, 그래픽 심볼 - 공공 안내 심볼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한다.

3.1 촉지 안내도(tactile maps)

건물 실내 공간 및 편의시설의 위치정보를 돌출된 선과 면, 촉지 기호, 점자 등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공간 정보를 촉각으로 알려 주는 안내도

3.2 편의시설(convenient facilities)

이용자가 안전하게 접근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다.

- a) 내부시설: 출입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종합안내소 등
- b)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일반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욕실, 샤워실과 탈의실 등
- c)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
- d)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매표소, 자동판매기, 음료대, 작업대, 개찰구 등

3.3 점자안내판(braille maps board)

촉지 안내도, 점자안내문구, 직원호출버튼 및 음성안내장치 등이 포함된 시설로 건물의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과 시설이용을 돕는 안내 시설

3.4 촉지 안내도 테두리(tactile maps boundary)

촉지 안내도의 바깥쪽 윤곽을 둘러싸는 돌출된 실선으로 촉지 안내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계이며 점자안내판 여백과 구분되는 선

3.5 건물 외형선(building visible outline)

건물의 크기 및 형태,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실과 편의시설 등을 촉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돌출된 실선

3.6 유도 동선(indicator moving line)

현 위치에서 목표지점까지의 보행 동선을 표시한 돌출된 점선

3.7 현 위치(current position)

주출입구 부근 등 촉지 안내도가 설치된 현재의 위치

3.8 픽토그램(pictogram)

픽토(Picto)와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과 시설 그리고 행동 등을 상징화된 그림문자(pictograph)로 나타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상징문자

3.9 촉지 기호(tactile symbol)

촉지 안내도에서 편의시설과 설비의 종류 등을 나타내는 돌출된 기호

3.10 점자(braille)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도록 촉각을 이용하는 점 집합으로 이루어진 표기법

3.11 묵자(regular print)

인쇄된 일반문자로 점자와 대비되는 용어

4 촉지 안내도 정보내용

4.1 정보 항목의 원칙

- a) 건축 도면을 기본으로 하되, 실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과 주요 편의시설 이외에는 생략 가능하다.
- b) 주요 실과 편의시설의 배치를 돌출된 선 및 면, 점자, 촉지 기호 등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 그 차이를 쉽고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c) 촉지 안내도에 표시하는 정보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이동편의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
- d) 굵기 및 높이는 표시방법에서 제시된 치수를 사용하도록 한다.
- e) 촉지 안내도는 해당 층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f) 촉지 안내도에는 목자를 같이 표기하여 비장애인도 사용 가능하게 한다.

4.2 촉지 안내도 구성

촉지 안내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a) 촉지 안내도 테두리
- b) 건물 외형선
- c) 유도 동선
- d) 현 위치
- e) 촉지 기호
- f) 점자
- g) 목자

4.3 대상 시설별 정보 항목

촉지 안내도 표시 정보 항목의 예는 [부속서 A]를 참고한다.

5 촉지 안내도 표시방법

5.1 일반 사항

- a) 기본적으로 돌출된 선, 면, 점자는 손 베임을 방지하는 등 쾌적하게 촉지 할 수 있도록 마감해야 하며 음각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 b) 건물 구조가 복잡하여 간소화 및 변형이 난해한 경우 시각장애인을 편의시설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시안을 검토 받아 촉지 안내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 c) 복도는 사무실, 민원실, 화장실 등 실내공간과 질감을 달리하여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한다.
- d) 건물의 출입구(문)는 외형선의 일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비워서 표시하고, 출입구(문)를 위한 별도의 촉지 기호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5.2 촉지 안내도 테두리

- a) 다른 선들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가능한 가장 높고, 굵은 돌출된 실선을 사용해야 한다.
- b) 실선 굵기는 3mm 이상, 실선 높이는 0.6m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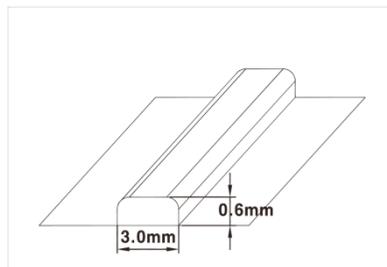


그림 1. 촉지 안내도 테두리 치수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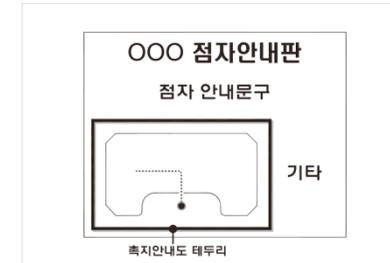


그림 2. 촉지 안내도 테두리 평면도

5.3 건물 외형선

- a) 건물의 형태 및 전반적인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촉지 할 수 있는 돌출된 실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b) 건물 외형선으로 표시된 주요 실과 편의시설 등은 건축도면에 준하도록 하되 촉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형 가능하다.
- c) 주요 실의 출입구(문) 위치 표시는 해당 건물 외형선의 출입구(문) 부분을 비워서 표시한다.
- d) 공원, 보도, 산책로 등 건물 이외 시설인 경우에도 건물 외형선 사용과 동일한 실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 e) 실선 굵기는 2.5mm 이상, 실선 높이는 0.6mm 이상으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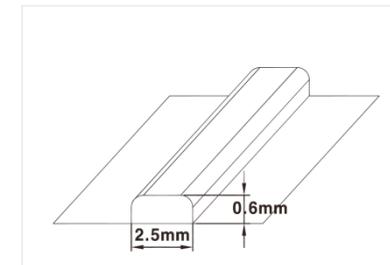


그림 3. 건물 외형선 치수 및 단면도



그림 4. 건물 외형선 평면도

5.4 유도 동선

- a) 현 위치에서 종합안내소까지 유도하기 위해 보행 동선을 방위에 맞게 돌출된 점선으로 표시한다. 단, 여객시설 촉지 안내도의 경우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을 단순화 하여 유도 동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b) 1개의 유도 동선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 c) 종합안내소가 없을 경우에는 안내가 가능한 곳으로 대체하여 유도 동선을 표시한다.
- d) 돌출된 점선의 굵기는 2.5mm 이상, 높이는 0.6mm 이상, 간격은 3mm 내외로 표시한다.
- e) 화장실 축지 안내도의 경우 유도 동선을 생략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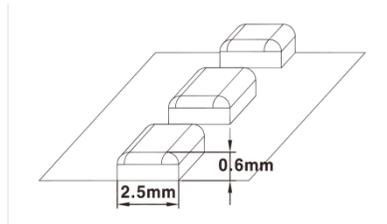


그림 5. 유도 동선 치수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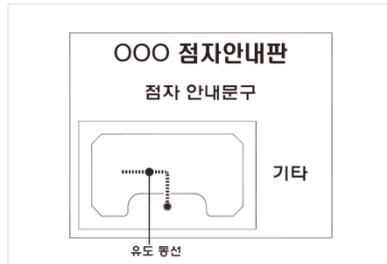


그림 6. 유도 동선 평면도

5.5 현 위치

- a) 축지 안내도에서 가장 쉽게 인지되어야 하는 요소로 다른 축지표시와 구별되도록 표시한다.
- b) 위치는 시각장애인의 축지 안내도 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하단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물의 형태에 따라 하단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전문가기관이나 단체에 검토를 받아 조정 가능하다.
- c) 현 위치의 높이는 5mm 이상, 지름은 8mm 이상이 되는 반구형으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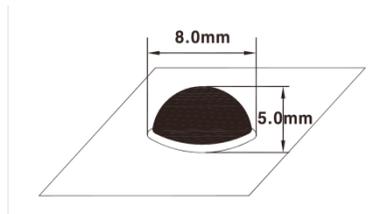


그림 7. 현 위치 치수 및 단면도



그림 8. 현 위치 평면도

5.6 축지 기호

축지 기호의 예는 [부속서 B]를 참고한다.

5.7 점자 표기

점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 a) 점자표기법은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 발간)을 따르며, 점자의 치수 및 형상 등 규격은 국가기술표준 KS B 6895, 엘리베이터 점자 표시의 점자 규격에 준하도록 한다.
- b) 점자 표기는 반구형을 원칙으로 하며 부식형의 경우 손 베임, 이질적 축지감 등 이유로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 c) 점자 표기는 축지 안내도의 가로축 방향과 평행하도록 표시한다.
- d) 주요 실과 편의시설은 실내 출입구 인근에 점자로 기입해야 하며 별도의 픽토그램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e) 건물 외형선 내의 점자 표기는 해당 영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f) 축지 기호 아래에 점자를 표기하여 축지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g) 점자와 돌출 선은 최소 5mm 이상 간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 h) 점자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표기 공간이 협소한 경우 다음 줄에 계속 표기한다.
- i) 해당 영역 내에 점자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점자 약자로 표기할 수 있다.

※ 비교: 남자화장실은 남(자), 여자화장실은 여(자),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 종합안내소는 안내소,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등

5.8 목자 표기

- a) 축지 안내도 내 목자는 점자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양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b) 목자 표기는 일반 사용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 c) 저시력인도 목자를 읽을 수 있도록 글자크기는 18 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단, 표기 공간이 협소한 경우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전문가기관이나 단체에 검토를 받아 조정 가능하다.
- d) 글꼴은 단순한 고딕 계열 등 공공디자인이 반영된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6 축지 안내도 형태

6.1 크기

크기는 최대 A3(297×420mm) 이내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A3 이내로 표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전문가기관이나 단체에 검토를 받아 조정 가능하다.

6.2 설치위치

촉지 안내도는 점자안내판 내의 좌측 하단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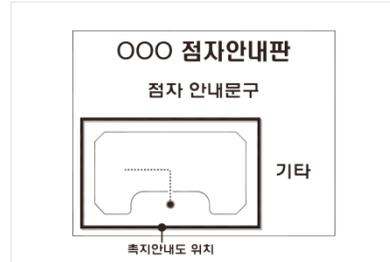


그림 9. 점자안내판 내의 촉지 안내도 위치

6.3 방위

촉지 안내도 방위는 다음과 같다.

- a) 방위는 건물 내부 공간배치와 일치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틀어지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b)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 방위 및 위치가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6.4 재질

촉지 안내도에 이용하는 재질은 다음과 같다.

- a)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한다.
- b) 이질감과 손 베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 c) 온도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부속서 A

(참고)

촉지 안내도에 표시될 정보 항목

이 부속서는 촉지 안내도에 표시될 정보 항목에 대해 기재하는 것으로, 규격의 일부는 아니다.

A.1 건물 촉지 안내도

정보 항목: 주요 사무실 및 편의시설(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A.2 여객시설 촉지 안내도

정보 항목: 외부출입구, 매표소(자동발매기), 개찰구, 편의시설(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 점자 블록, 화장실 등

A.3 보도 촉지 안내도

정보 항목: 방향 정보, 보도, 차도, 횡단보도,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주요 건물 및 시설, 점자블록 등

A.4 공원 촉지 안내도

정보 항목: 공원로, 매표소, 주차장, 화장실, 연못, 관리 사무소, 점자블록 등

A.5 화장실 촉지 안내도

정보 항목: 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등

부속서B

(참고)

촉지 기호

이 부속서는 촉지 안내도에 이용할 수 있는 촉지 기호에 대해 기재하는 것으로, 규격의 일부는 아니다.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종합안내소, 개찰구, 경사로, 자동발매기, 세면대, 양변기 등은 건물 외형선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촉지 기호로 표시한다.

B.1 공통사항

B.1.1 크기(Size)

이 부속에서 제시된 촉지 기호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1cm 이상으로 표시하고 촉지 기호 실선의 굵기는 1.5mm 이상 높이는 0.6mm 이상으로 표시한다.

B.1.2 범례

촉지 기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점자안내판 기타란에 촉지 기호의 범례를 표시할 수 있다.

B.2 촉지 기호별 표시 방법

B.2.1 계단 촉지 기호

계단은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참고한 기호로 아래의 그림10과 같이 표시하고 정확하게 촉지 할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양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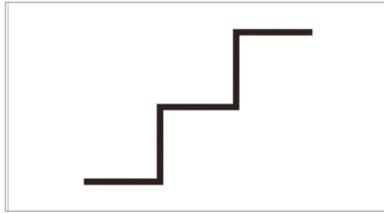


그림 10. 계단 축지 기호

B.2.2 엘리베이터(승강기) 축지 기호

엘리베이터는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참고한 기호로 아래의 그림11과 같이 표시하고 정확하게 축지 할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양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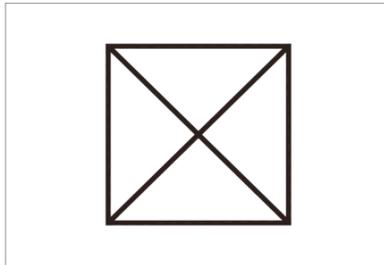


그림 11. 엘리베이터(승강기) 축지 기호

B.2.3 에스컬레이터 축지 기호

에스컬레이터는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참고한 기호로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표시하고 정확하게 축지할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양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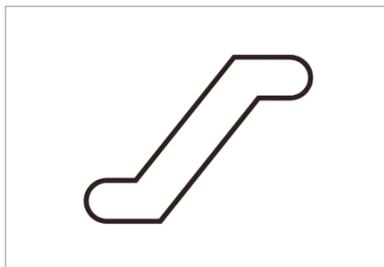


그림 12. 에스컬레이터 축지 기호

B.2.4 종합안내소 축지 기호

종합안내소는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참고한 기호로 아래의 그림13과 같이 표시하고 정확하게 축지 할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양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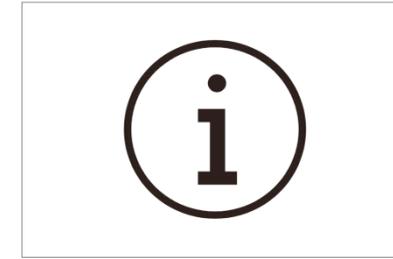


그림 13. 종합안내소 축지 기호

B.2.5 개찰구 축지 기호

개찰구는 건축 도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상징화된 기호로 아래의 그림14과 같이 표시한다. 정확하게 축지 할 수 있도록 영어 대문자 'H'로 도드라지게 양각하고, 축지 기호는 개찰구의 설치 폭만큼 축지 기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 개찰구의 수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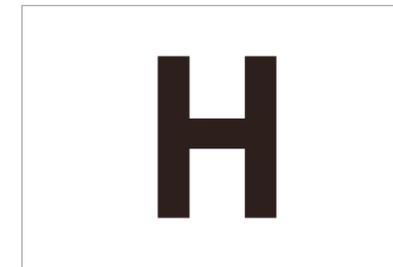


그림 14. 개찰구 축지 기호

B.2.6 경사로 축지 기호

경사로는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참고한 기호로 아래의 그림15와 같이 표시하고 정확하게 축지 할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양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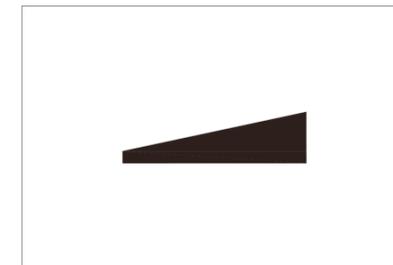


그림 15. 경사로 축지 기호

B.2.7 자동발매기 축지 기호

자동발매기는 양각화된 기호로 아래의 그림16과 같이 표시한다. 정확하게 축지 할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양각하고, 축지 기호는 실제 자동발매기수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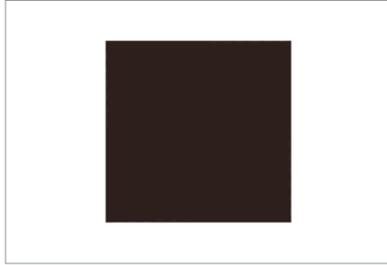


그림 16. 자동발매기 촉지 기호

B.2.8 환급기 촉지 기호

환급기는 양각화된 기호로 아래의 그림17과 같이 표시하고 정확하게 촉지 할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양각하고, 촉지 기호는 실제 환급기수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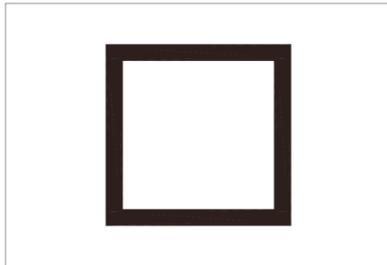


그림 17. 환급기 촉지 기호

B.2.9 세면대 촉지 기호

세면대는 화장실 촉지 안내도에 표시되는 기호로 세면대의 형태를 기호로 아래의 그림18과 같이 표시하고 정확하게 촉지 할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양각하고, 공간이 좁은 경우 촉지 기호는 실제 세면대수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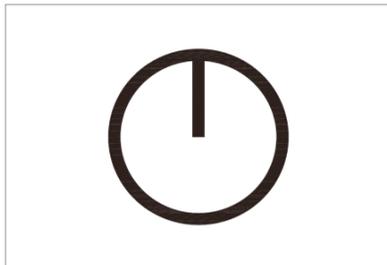


그림 18. 세면대 촉지 기호

B.2.10 대변기(양변기, 화변기) 촉지 기호

대변기(양변기, 화변기)는 화장실 촉지 안내도에 표시되는 기호로 대변기(양변기, 화변기)의 형태를 기호로 아래의 그림19, 그림20 과 같이 표시하고 정확하게 촉지 할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양각하고, 공간이 좁은 경우 촉지

기호는 실제 대변기수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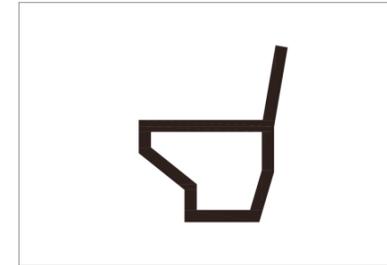


그림 19. 양변기 촉지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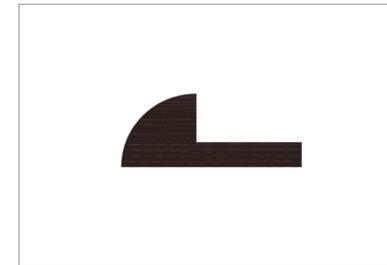


그림 20. 화변기 촉지 기호

B.2.11 소변기 촉지 기호

소변기는 화장실 촉지 안내도에 표시되는 기호로 소변기의 형태를 기호로 아래의 그림21과 같이 표시하고 정확하게 촉지 할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양각하고, 공간이 좁은 경우 촉지 기호는 실제 소변기수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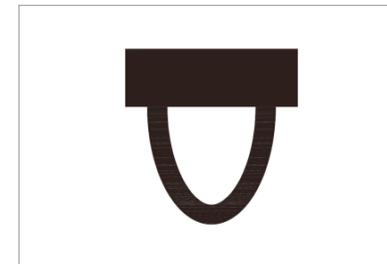


그림 21. 소변기 촉지 기호

08

부록 2. 점자 편의시설 설치 사례집

1. 점자 안내판



의무

여객 시설(기차역) 출입구 외부에 출입구 진입 방향으로 점자 안내판을 설치함. 여단이문이거나 누름 버튼 자동문(열리는 문이 1개인 자동문)인 경우, 문 손잡이나 누름 버튼의 벽면 또는 그 전면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함. 만약 출입구가 양개문(열리는 문이 2개인 문) 또는 양개형 자동문인 경우, 점자 안내판 축지가 용이한 문, 우측 문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 위치를 설정함.

권장

점자 안내판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중심선의 높이를 1.3미터 정도로 함.



의무

지하철 출입구에 일반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곳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함.

권장

지하철 출입구에 일반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까운 곳에 점자 안내판 설치를 권장함.



의무

건물 출입구 외부 가까운 곳에 출입구 진입 방향으로 벽면형 점자 안내판을 설치함. 여단이문이거나 누름 버튼 자동문(열리는 문이 1개인 자동문)인 경우, 문 손잡이나 누름 버튼의 벽면 또는 그 전면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함. 만약 출입구가 양개문(열리는 문이 2개인 문) 또는 양개형 자동문인 경우, 점자 안내판 축지가 용이한 문, 우측 문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 위치를 설정함.



의무

건물의 출입구 외부 가까운 곳에 출입구 방향으로 스탠드형 점자 안내판을 설치함. 세부 위치는 상기의 벽면형과 동일함.



권장

기타 안내에 총별 안내를 추가할 수 있음.



의무

현 위치와 실제 방위에 맞게 점자 안내판을 설치함.

2. 손잡이 점자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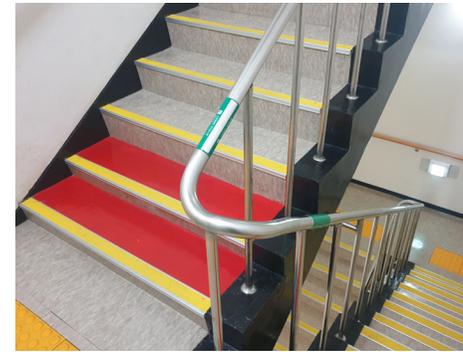
의무

계단 손잡이에 방향(화살표), 층, 실명 정보 등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은 벽면 쪽으로 15도 기울여 설치함.



의무

계단 수평 손잡이 양측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함.



의무

계단에 수평 손잡이가 없는 경우 계단 시작점에서 가장 가까운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함.



의무

복도 손잡이 설치가 의무인 대상시설인 경우 복도 손잡이 끝나는 부분(출입구)에 화살표와 해당 실명이 표기된 점자 표지판을 설치함.



권장

에스컬레이터 진입금지 방향에는 '진입금지' 점자 표지판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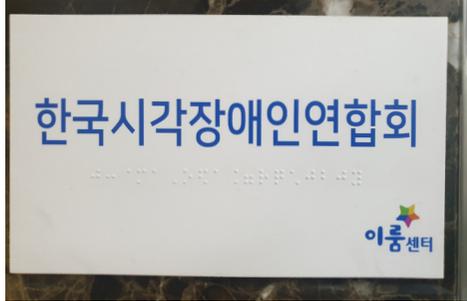


3. 벽면 점자 표지판



의무

자동문의 버튼 쪽 벽면 1.5미터 높이에 해당 실명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설치함.



권장

점자 표지판의 표면 색상을 벽면 색상과 대비되게 하여 점자 표지판을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음.



의무

출입문의 형태가 양개형인 경우 열리는 문 쪽 벽면, 1.5미터 높이에 해당 실명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설치함.



의무

화장실 출입구는 좌·우측 구분 없이 1.5미터 높이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함.

권장

보행상 장애 요소가 없을 경우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측 벽면 설치를 권장함.



의무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 쪽 벽면 1.5미터 높이에 점자 표지판을 설치함.



권장

화장실 출입구(문)에 화장실 축지 안내도를 설치하여 화장실 내부 정보를 제공함.





의무

화장실 출입문(구)이 외부 또는 복도에 면하고 있을 경우, 외부나 복도 벽면에 남, 여를 구분하여 중심선 높이 1.5미터로 점자 표지판을 설치함.



권장

승강기 조작반 상단 1.5미터 높이에 운행 정보와 층 정보를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음.



4. 승강기 점자 표지판



의무

승강기 내부, 외부 모든 버튼에 점자 표기를 표기함.



5. 기타 점자 편의시설



의무

판매기 설치가 의무인 대상 시설인 경우, 자동발매기 버튼과 투입구, 발급구, 사용 설명 등에 해당 내용을 점자로 표기함.



의무

세면대, 욕실 설치가 의무인 대상 시설인 경우,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 표기함.

권장

사위실 설치가 의무인 대상 시설인 경우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 표기를 권장함. 또한 모든 냉·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에 냉수는 파란색, 온수는 빨간색으로 색상을 추가할 수 있음.



권장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를 일체형으로 할 수 있음.



의무

음향 신호기 버튼 함체에 '고장 신고 120', '신호기 버튼'을 점자 표기함.



권장

비데 등 기타 편의시설 조작반에 점자를 표기할 수 있음.



권장

사무실 내부에 피난안내도를 촉지도 형태로 설치할 수 있음.

08

부록 3. 점자일람표

점자일람표													읽기형		
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원소리
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모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약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연	얼	연
	열	영	옥	운	웁	웁	울	은	울	인	것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10	수표11		
문장부호	!	?	.	.	-	~(-)	*	“ ”	‘ ’	/					
	:	가운뎃점	말줄임표(...)	말줄임표(...)	소괄호()	대괄호[]	화살표←								
영	영어식표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어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포스트로피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ㅍ, ㅌ' 다음에 약자 영 ㅈ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08

부록 4. 점자 예시

화장실 점자 표지판

목자	점자
남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남자(장애인)화장실	남자(장애인)화장실
여자(장애인)화장실	여자(장애인)화장실
좌측 남자화장실 우측 여자화장실	좌측 남자화장실 우측 여자화장실
냉	냉
온	온

승강기 점자 표지판

목자	점자	목자	점자	목자	점자
개	개	호출	호출	2	2
폐	폐	b1	b1	3	3
상	상	f	f	4	4
하	하	1	1	5	5

계단 점자 표지판

목자	점자
→ 지상 2층 복지정책과 올라감	→ 지상 2층 복지정책과 올라감
→ 지상 1층 민원실 내려감	→ 지상 1층 민원실 내려감
→ 청량리역 방면 타는 곳	→ 청량리역 방면 타는 곳
→ 지하 1층 대합실 방면 올라감	→ 지하 1층 대합실 방면 올라감
→ 좌측 오금방면 우측 대화방면 타는 곳	→ 좌측 오금방면 우측 대화방면 타는 곳
→ 1번 출구 ○○○방면 나가는 곳	→ 1번 출구 ○○○방면 나가는 곳
→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 지상 3층 상담실 올라감	→ 지상 3층 상담실 올라감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

연구 책임자 이진원(센터장)
공동 연구원 김홍진(선임연구원)
연구 보조원 박송이(연구원)
담당 연구원 남미정(학예연구사), 김민정(연구원)
자문 위원단 김영일(조선대학교 교수)
김원식(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장)
안성준(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

발행인 소강춘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21년 07월 31일

발행일 2021년 07월 31일

문의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601호

전화 02-799-1024, 전송 02-799-1017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 발간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